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부대의견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안 제8조)

- 인우보증인의 요건을 “희생자의 친족,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으로 개정

나. 용어 정비(안 제13조)

-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개정

다.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라. 공동체 회복 지원 등(안 제17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트라우마 치유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노근리사건 당시 영동군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친척”을 “친족”으로 한다.

-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 3)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제10조 중 “법 제5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치료비·개호비”를 “치료비·간병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9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사업 및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중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중전의 제15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다른 법률에 따라 노근리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치유사업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친척”을 “친족”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가)

희생자 신고서(사망자·행방불명자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여
	신고 사유	[] 사망 [] 행방불명	년 월 일 사망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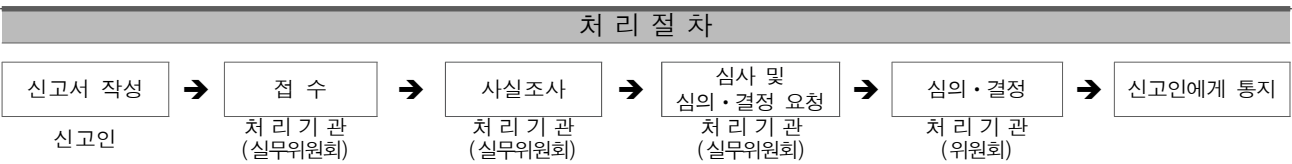
※ 2명 이상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나)에 기재

사망(행방불명)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기재
------------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으로 한정한다)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2.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①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②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③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없음



210 × 297mm[백상지 80g/㎡]

희생자 신고서(사망자·행방불명자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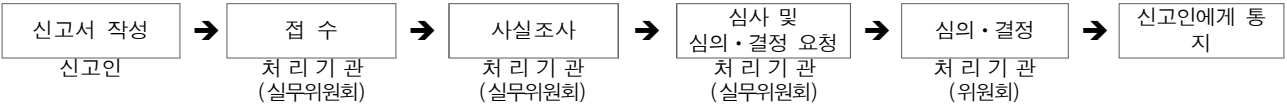
	() (한자)	생년월일		성별	[] , []여
신고	[]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기재			

희생자 신고서(사망자·행방불명자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희생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고	[]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기재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희생자의 유족명단(사망자·행방불명자용)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희생자 신고서(후유장애인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피해상황	발생일시	당시 연령	당시 직업
		주요내용		

지급 검토사항

후유장애내용	별지 제2호서식(나)에 기재	
향후 치료비	[] 필요	[] 불필요
간병비	[] 필요	[]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	[] 필요	[]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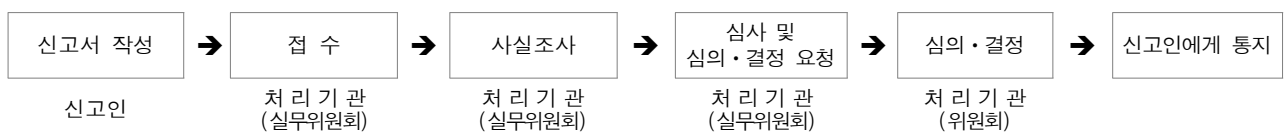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희생자(후유장애) 신고를 합니다.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장애정도 또는 현 증상, 향후 치료비 산정금액 등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①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②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③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후유장애내용

인적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법제처장·충청북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 ----- 제4조 ----- ----- ----- ----- ----- -----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	제6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 ----- ----- ----- ----- ----- ----- -----

정하는 충청북도 부지사,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영동군 부군수와 충청북도 지사가 위촉하는 유족 대표·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략)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근리 사건 당시 영동군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신 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

1. 2. (현행과 같음)

3.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신 설>

<신 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으로 신고하
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인 경우에
는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척 2명이 각각 별
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보증서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
나 목격한 사람

3)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
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
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
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
은 사람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

-----.

1. 2. (현행과 같음)

3. -----

----- 친족 -----

③ (생략)

제10조(심의·결정 등)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임명하고, 단원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결정 등) -----

----- 법 제7조 -----

-----.

제1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2항 -----

-----.

②·③ (생략)

제13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 치료비 · 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46만3천원에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제14조(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0조제1항----- 치료비 · 간병비 -----

-----.

1. (현행과 같음)

2. 간병비-----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0조-----

-----.

제15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법 제14조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사업 및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노건
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
정된 자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작
성 또는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
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
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구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재심의)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
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
른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법 제4조제2항-----

제16조의2(재심의) ① 법 제11조
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2항-----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다른 법률에 따라 노근리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제16조</u> (생 략)	<u>제1항에 따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치유사업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제18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연 락 처	(044) 205 - 3261